

##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보건향상 및 청정환경 보전을 위하여 각종 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환경연구원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징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시험의뢰) ①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검사, 시험, 분석, 감정 및 소분, 봉합(이하 “검사시험 등”이라 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의 의뢰서 또는 신청서와 “별표1”에 정한 시험용 검체소요량을 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기타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구애됨이 없이 공문서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시험 등을 의뢰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별지 제6호 서식”의 시험의뢰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기일내에 시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에 기준, 시험방법의 검토 및 그에 관한 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검체와 기준 및 시험방법 등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준 및 시험방법의 변경에 대한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검사, 시험등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및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과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한 수수료액표에 의하며, 동규칙에 기재되지 아니한 품목은 동규칙에 규정된 내용과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의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는 검사시험등을 의뢰할 때에 충청북도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로 납부하여야 하며 사본 청구시에도 또한 같다.

③검사, 시험 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현지출장을 요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장공무원의 여비 및 시험기구 운반에 필요한 실비를 수입증지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여비는 충청북도여비조례에 의하여 산정하며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시험성적서 교부) ①연구원에서 검사, 시험 등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거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시험성적은 확정후 발급당시의 주소, 성명 등 오자·탈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정정을 하지 못한다.

③시험성적서는 의뢰자의 원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 한다.

④시험성적서 발급후 의뢰자로부터 사본발급 요청이 있을시는 “제3조 제1항”에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후 발급한다.

제5조(수수료 감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가 그 기능 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 등을 의뢰 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한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부정식품 및 의약품 단속을 위한 경우
2. 법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3. 배출시설에 대한 정기환경오염도 검사
4.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5. 타법령에 의거 수수료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6.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의 수질검사
7. 의회에서 의정활동상 필요한 경우
8.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목욕수 원수 및 욕조수를 수거하여 검사를 의뢰한 경우
9. 도내에 소재한 각급학교, 군부대에서 의뢰하는 수질검사 수수료는 먹  
는물 검사수수료의 50% 감면

제6조(검사, 시험 등 불응) 검사, 시험등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사, 시험 등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검체 및 수수료의 처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검체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을 행하여도 그 사용가치가 남아있는 검체는 시험이 끝난후 7일 이내에 시험의뢰인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 하여야 한다.

제8조(시험결과의 광고등 금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결과는 시험의뢰 목적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 포장등에도 이를 표시할 수 없다.

제9조(성적원본의 말소) ①원장은 시험의뢰인이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시험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 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한 때에는 말소당han자의 성명과 말소이유, 시험을 한 물품명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